# 종로구 한강 다목적 운동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강 다목적 운동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강 다목적 운동장(이하 "운동장" 이라 한다) 내의 모든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인솔자(대표자)를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업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동장의 운영 및 관리
2. 운동장 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3. 운동장 내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4. 각종 체육 강좌 및 기획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운동장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의 처리 및 조치

제4조(시설운영) ① 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며, 사용료 등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운영기간, 운영시간 및 신청절차 등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운동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4. 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사람
3. 흉기, 인화 물질 등 사용자의 안전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휴대한 사람
4. 천연 잔디 축구장의 경우 천연잔디용 축구화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사용승인) ① 운동장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승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사용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서(별표 제2호 서식)를 사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 승인의 우선순위) 이사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종로구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구경기, 대회 및 행사
3. 종로구 생활체육회 또는 축구연합회가 주관하는 축구경기, 대회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단체로 참여하는 축구경기 및 족구경기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축구경기

제9조(사용시간) ① 운동장의 1일 사용 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4월~11

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료) 운동장 사용료는 사용승인 후 48시간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초과사용 시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 다만, 사용일 7일 이전에 문서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② 제1항 각 호 외에 사용료 반환은「소비자기본법」의「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